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한표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0540
----------	-------

발의연월일 : 2014. 5. 9.

발 의 자 : 김한표 · 김세연 · 정희수
이만우 · 문대성 · 송영근
이에리사 · 박인숙 · 김현숙
김도읍 의원(10인)

제안이유

지난달 경주지역에서 피이비(Pre-Engineered Metal Building System) 공법으로 시공된 리조트시설 체육관의 지붕이 붕괴되어 총 138명의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하였음.

이번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서는 경주지역에 내린 폭설로 인해 설계 당시의 적설하중을 훨씬 웃도는 눈이 안전성이 취약한 피이비 건축물에 쌓인 점과 이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시설관리자가 제때에 제설 작업을 실시하지 않은 점, 그리고 건축물 설계·시공 및 감리 상의 부실 등이 지적되고 있음.

이에 폭설 등 증가하는 기상이변에 대비한 건축물의 안전성 확보 방안을 마련하고, 피이비 등 특수구조물에 대한 관리·감독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경주 마우나오션리조트 사고와 같은 대형 안전사고의 재발을 방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에 건축물의 구조내력(構造耐力)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도록 하여 건축물의 안전관리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38조제1항).
- 나. 폭설 등 기상이변에 대비하여 건축물이 안전한 구조를 가질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장관이 구조내력의 기준을 3년마다 재검토하도록 함(안 제48조제4항 신설).
- 다. 피이비(Pre-Engineered Metal Building System) 등 특수구조물 등의 설계자는 해당 건축물에 대한 구조의 안전을 확인하는 경우에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도록 함(안 제48조의2 신설).
- 라. 피이비 등 특수구조물의 건축주 등은 건축사협회나 전문 인력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로 하여금 건축물의 구조 안전 여부를 조사하게 하고, 그 결과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81조제4항).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현황을”을 “현황 및 제48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구조내력(構造耐力)에 관한 정보를”로 한다.

제48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구조내력의 기준을 3년마다 재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정비하여야 한다.

제48조의2를 제48조의3으로 하고, 제4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8조의2(건축구조기술사와의 협력)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설계자는 제48조제2항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대한 구조의 안전을 확인하는 경우에는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

1. 6층 이상인 건축물
2.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가 30미터 이상인 건축물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중이용 건축물
4. 한쪽 끝은 고정되고 다른 끝은 지지(支持)되지 아니한 구조로 된 차양 등이 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3미터 이상 돌출된 건축물
5. 지진구역의 건축물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6. 피이비(Pre-Engineered Metal Building System)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특수구조물

② 고층건축물의 공사감리자는 감리업무 수행 중에 건축물의 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설계변경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확인된 경우에는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설계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협력한 건축구조기술사는 구조의 안전을 확인한 건축물의 구조도 등 구조 관련 서류에 설계자 또는 공사감리자와 함께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제81조제4항 중 “지정하는 건축물”을 “지정하는 건축물 또는 피이비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특수구조물”로 한다.

제111조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제48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설계자 또는 공사감리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4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계자는 제48조제2항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대한 구조의 안전을 확인하는 경우에는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

1. 6층 이상인 건축물
2.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가 30미터 이상인 건축물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중이용 건축물
4. 한쪽 끝은 고정되고 다른 끝은 지지(支持)되지 아니한 구조로 된 차양 등이 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3미터 이상 돌출된 건축물
5. 지진구역의 건축물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6. 피이비(Pre-Engineered Metal Building System)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특수 구조물

② 고층건축물의 공사감리자는 감리업무 수행 중에 건축물의 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설계변경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확인된 경우에는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아야

제48조의2(건축물 내진등급의 설정) (생략)

제81조(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안전점검 및 시정명령 등) ① ~ ③ (생략)

④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위해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건축물의 건축주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사협회나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전문 인력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로 하여금 건축물의 구조 안전 여부를 조사하게 하고, 그 결과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생략)

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설계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협력한 건축구조기술사는 구조의 안전을 확인한 건축물의 구조도 등 구조 관련 서류에 설계자 또는 공사감리자와 함께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제48조의3(건축물 내진등급의 설정) (현행 제48조의2와 같음)

제81조(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안전점검 및 시정명령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지정하는 건축물 또는 피이비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특수구조물-----

-----.

⑤ (현행과 같음)

제11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5. (생략)

<신설>

6. (생략)

제111조(벌칙) -----

-----.

1. ~ 5. (현행과 같음)

5의2. 제48조의2제1항 또는 제2
항을 위반한 설계자 또는 공
사감리자

6. (현행과 같음)